

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새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은 정부</b>	
		배포일시	2019. 1. 28(월) 총 2매(본문 2매)	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 당 자	· 과장 박병석, 사무관 박균성, 사무관 박정규 · ☎ (044)201-3544, 3543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허위 연식 적발 회피를 위한 ‘명판 같이’ , 보다 철저한 조사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.

-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·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명 ‘명판\* 같이’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하여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이 됩니다.

\* 정격하중 및 형식번호, 제작연월, 제작자 등을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 동판

- 또한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 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같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, ‘18.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사례가 일부 있어 그간 명판 확인이나 차대일련번호 분석, 제작사 확인요청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,
-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 같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판의 조작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하였으나, '19.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  
- 참고로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'19.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, 이는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JTBC 뉴스, 1.26) >

- ① 노후 타워크레인 제한에 제조연도를 조작한 가짜 명판을 바꿔 다는 이른바 '명판갈이' 성행
- ② 업계에서는 조작된 명판을 갈아끼는 게 가능한 것은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이며, 20년 이상 연식제한 등 지나친 규제 탓이라고 주장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54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